특수폭행치상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10. 16. 2017고단189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현문정(기소), 김범준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유영화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